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520-10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세청

2020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성실납세 해 주신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신고·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가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의적 탈세 행위에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관련 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기업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3.

국세청장

Contents_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3
1.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4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5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6



II. 기업경영과 세무	7
1. 절세와 탈세.....	8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9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10
4.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11
5. 분식결산과 세무.....	12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13
7.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14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16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18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19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20
12.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21
13.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6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27
15. 해외 직접투자자와 세금.....	28
16.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30
17.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32
1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33
1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34
20.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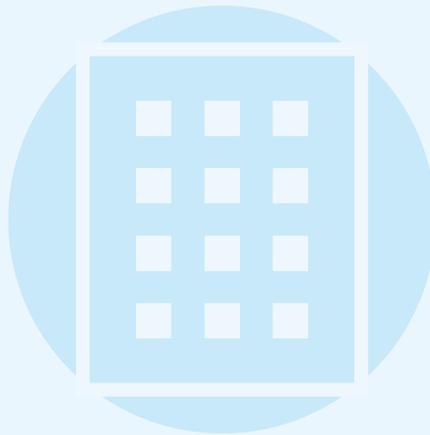
III.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37
1. 법인세.....	38
2. 부가가치세.....	40
3. 종합부동산세.....	41
4. 주식양도와 세금.....	42
5. 원천징수하는 세금.....	46
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47
7. 기부장려금 제도.....	48
8.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49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51
-----------------------------	----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1.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1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면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와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텍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
-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철저한 부채상환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의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대기업 사주일가, 전관특혜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서도 엄단
-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친화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축소하여 나가겠습니다.

*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을 활성화하고,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여 납세자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년·중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지원을 활성화하여,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수준 향상과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사전지원’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추진

* 조사기간 최소화

- 조사유형별로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 경감

*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운영

-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짧은 조사 기간 동안 회계 및 세무분야 등에 대한 지도·상담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 구체적 탈루 혐의 시 조사 실시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

II.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4.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5. 분식결산과 세무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7.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11.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12.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13.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5. 해외 직접투자와 세금
16.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17.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1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1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20.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II.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세금신고 시 불이익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법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II. 기업경영과 세무

3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 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II. 기업경영과 세무

5 분식결산과 세무

*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있습니다.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6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II. 기업경영과 세무

7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재해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⑧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⑨ 위의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이 가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는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가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II. 기업경영과 세무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0억원 한도)을 증여 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30의6)

-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8②)
-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하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II. 기업경영과 세무

9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5. 2. 23. 부터 전자불복청구제도 시행



10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관점에서 분석하여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 · 제도 등을 발굴 ·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관련 누리집]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기업경영과 세무

1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 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분	내용	수도권		수도권 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조특법§6)	5년간 50~100% 세액감면	50%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소기업	-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업종외 20%	- 의료, 도·소매업 10% - 상기업종외 30%
		중기업	- 감면 혜택 없음 (지식기반산업은 10%)	- 의료, 도·소매업 5% - 상기업종외 15%
각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130)		세액공제 배제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는 허용)		공제 허용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해당 포함)·북평·강진·정읍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폐광진흥지구 입주 관광숙박업 영위 기업 등 포함)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 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면 일정 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17, 121의20~22).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1. 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기업경영과 세무



II. 기업경영과 세무

*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업종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 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 분	내 용
세액감면 및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 -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2(0.1%), 10%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보전액의 15%)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0%)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혜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요 내용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증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100% ← 종전 50~75%(1년)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임금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 1천만원(중견 7백만원)



II. 기업경영과 세무

* 시설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3%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2%(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 공제 :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직장어린이집은 10%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 R&D에 따른 세제혜택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0~2%(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비 : 연구시험용 자산 등 • 공제액 :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기타 조세지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 M&A와 세금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p>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II. 기업경영과 세무

13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도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대상 법인

-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 \times 65\% - (\text{투자금액} + \text{임금증가금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times 15\% - (\text{임금증가금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 45의9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개인의 경우 2011년 귀속부터 시행하였으며,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법인
 -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 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신고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II. 기업경영과 세무

15 해외 직접투자자와 세금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 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 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그 고유번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⑥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불이익(소득법 § 176,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법인법 § 123, 같은법 시행령 별표2)
 - (개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300만원 → 건별 500만원
 - (법인)과태료 부과기준 : 건별 500만원 → 건별 1,000만원
 - (대상 확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 신설
 -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외국환거래법 § 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봄
 - (과태료 금액)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II. 기업경영과 세무

16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2%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한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1)}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2)}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3)}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 1) 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

* 3)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국내·해외 주택임대 관련 신고방법 비교]

구분	국내주택	해외주택		
과세요건 (주택수기준)	주택 수 ¹⁾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²⁾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³⁾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또는 국내·해외주택을 합산하여 계산 2) 해외주택 및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월세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21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년 귀속부터 미등록 가산세 부과	해당 없음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당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수입금액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			
	수입금액	신고방법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6~42%)와 분리과세(14%) 중 선택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6~42%)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명세서 신고	해당 없음	해외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 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신고 의무(5월)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는 40%)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납부 세액 × 납부지연 일수 × (25/100,00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0.2% (해외주택은 제외)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미(거짓)제출시 과태료	구분	과태료*	한도액	비고
	해외부동산 (처분신고는 '19년 과세 연도분부터 시행)	·(취득) 취득가액의 1% ·(투자운용) 취득가액의 1% ·(자금출처) 미소명금액의 20%	5천만원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
	* '20년 과세연도분부터 취득·투자운용·처분가액의 10% (한도:1억원)			

기업경영과 세무



II. 기업경영과 세무

17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역외자산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37)

*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
 - 해외금융회사에 예적금·증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18년 보유분('19년 신고분)부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17년 보유분까지는 10억원)
- 신고방법 : 6월중(6.1~6.30) 전년도 보유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신고내용
 -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명·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 + 20억 초과금액 × 15%
50억초과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소명시 과태료(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1, 같은 법 시행령§21의2)

* 보고서 종류 · 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 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 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 원 초과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 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 원**



II. 기업경영과 세무

1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 - 5%(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이 되는 날('19.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0.6.30.)



2020년 신고분,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2단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30%(50~40%) 초과여부 확인

- ① 수혜법인의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 ③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 ④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그 비율이 30%(중소 50%·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3단계 수증자 확정[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4단계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 세후영업이익
-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중견 20%·중소기업 50%)
 - * ① 및 ② 산정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 포함)}}{\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추가 과세제외 포함)}} \times 100$$

-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중견 5%·중소기업 10%)
- ④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②×③) - ④
 - 주식 직·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기업경영과 세무



II. 기업경영과 세무

20 일감댂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일감댂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의4)

* '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19년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0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begin{aligned}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 \\ &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수} \times 12] \times 3 \end{aligned}$$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 \times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하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 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함)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begin{aligned}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 & \text{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 & \text{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end{aligned}$$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주식양도와 세금
5. 원천징수하는 세금
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7. 기부장려금 제도
8.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1 법인세

*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 연도(1회계기간) 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몰로 종료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로 신설('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 현금흐름표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와 세금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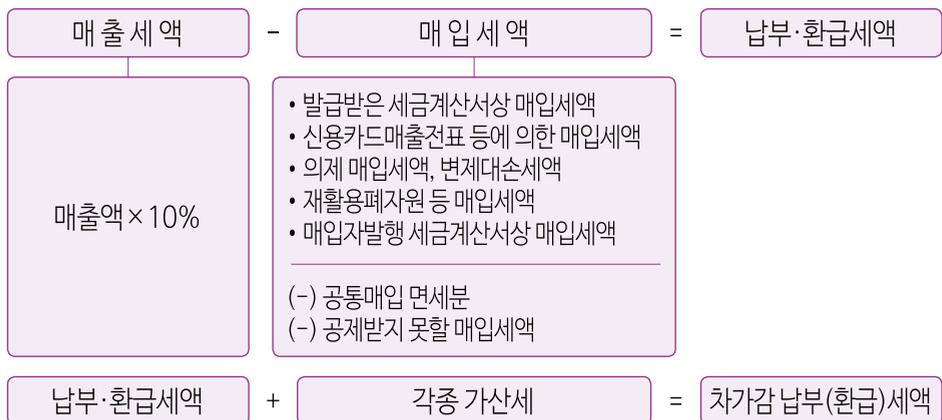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일반	제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	1.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3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주택	인별합산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80억원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 공제

* 1세대1주택 연령별·장기보유자 세액공제(중복적용 가능 한도 70%)

- 연령별 세액공제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및 납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기준으로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하며, 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납부함

-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금은 당초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4 주식양도와 세금

* 주식 양도 시 관련된 세금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관련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증여세는 무상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구 분	과세 대상
상장주식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원칙)
기 타 자 산	·특정주식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지분 50%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의 자에게 당해법인 지분 50% 이상 양도 *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포함('19.1.1.이후 과점주주간 양도분부터)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 ·영위 법인 주식(1주라도 양도시 과세)
	·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1주라도 양도시 과세)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서울

구 분		세 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25%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		6~42%	

*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단, 중소기업은 '20.1.1.이후 양도분부터)

** 자산총액중 비상업용 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16~52%)

• 대주주 범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 157 및 § 167의8)

*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서울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	'16.4.1.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이후 양도	'21.4.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원이상	1% 또는 15억원이상	1% 또는 10억원이상	1% 또는 3억원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원이상	2% 또는 15억원이상	2% 또는 10억원이상	2% 또는 3억원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3억원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원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원이상	4% 또는 10억원이상	4% 또는 3억원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 예정신고 기한

구 분	신고기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확정신고)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 확정신고 대상(신고기간 :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 등 포함)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자

* 증여세

증여세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의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주식거래 형태가 양도나 증여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도 증자·감자·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울

거래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서울	농어촌특별세 서울	거래되는 주권
유가증권시장	1,000분의 1	10,000분의 15	상장주식
코스닥시장	1,000분의 2.5	-	
코넥스시장	1,000분의 1		
K-OTC시장	1,000분의 2.5		
장외거래*	1,000분의 4.5	-	상장 및 비상장주식

* '20.3.31.이전 1,000분의 5

• 신고기한

구분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증권시장 양도주권 등 (법 제3조 1호)	한국예탁결제원	다음달 10일
금융투자업자 통한 주권등 양도 (법 제3조 2호)	금융투자업자	다음달 10일
법 제3조 1호 및 2호 이외 주권등 양도 (법 제3조 3호)	양도자 또는 양수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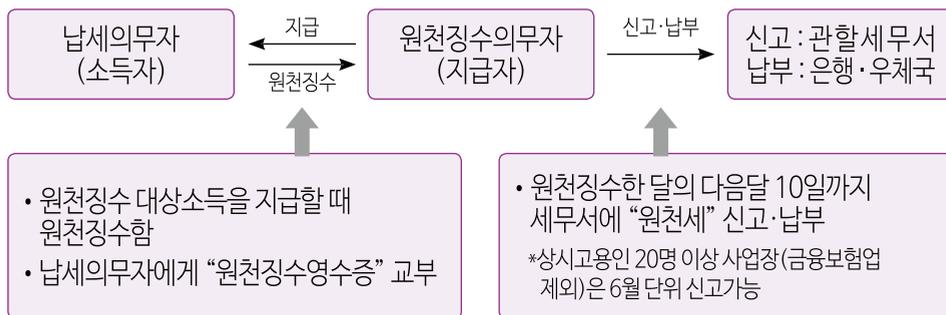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5 원천징수하는 세금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ETC)·자녀장려금(CTC)이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 '20년 5월 신청하면 심사(소득·재산검증)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요건을 충족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가구 4,000만원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에 의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구분
- '19.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기타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목별정보 참조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이란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19년 최초 시행)
- '19년 하반기소득에 대한 반기별 신청기간은 '20.3.1.~3.16.이며, '20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에 한하며,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산 시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19년 귀속 신청자격을 적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반기별 신청에 대한 지급액은 산정된 장려금의 35%이며, 정산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7 기부장려금 제도

* 기부장려금 제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진정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1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방법은

- 신청대상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와 법인은 제외)
 - ➔ 근로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보험모집, 방문판매, 계약 배달판매 등)
- 신청방법 :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 ➔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금단체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납세협력 의무의 이행과 회계투명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 기부장려금 지급은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아 다음연도 6월말까지 국세청에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을 지급함



8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고 원활한 기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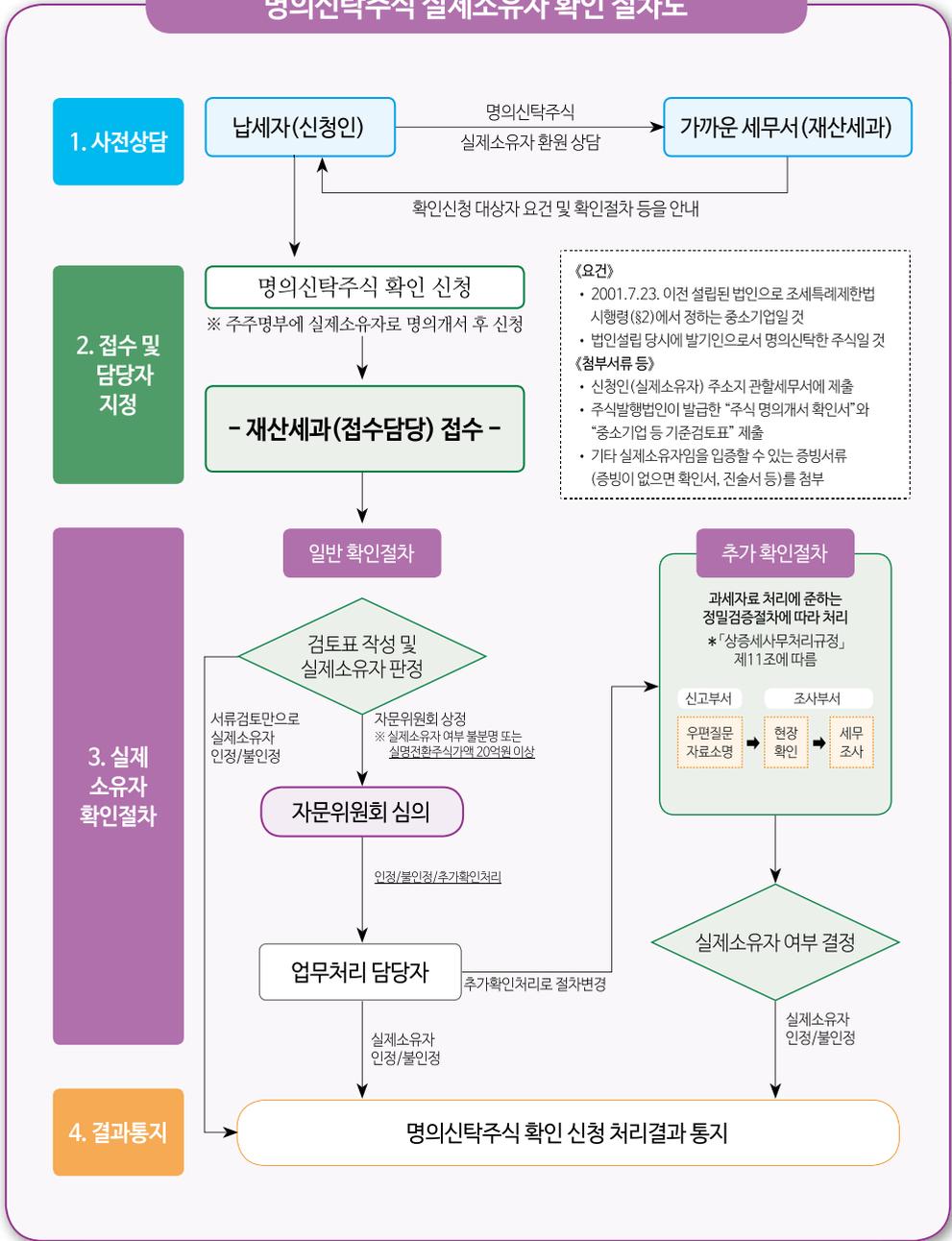
(명의신탁 환원)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Ⅲ.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도



※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수선비 세무처리</p> <p>○ 자본적 지출*: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p> <p>-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 300만원 미만 수선비 ·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p> <p>○ 수익적 지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p>	<p>■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p> <p>○ (좌 동)</p> <p>· 300만원 → 600만원</p> <p>○ (좌 동)</p>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p> <p>○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p> <p>○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p>	<p>■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p> <p>○ 1,000만원 → 1,500만원</p> <p>○ 1,000만원 → 1,500만원</p>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을 보완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p> <p>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p> <p>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p> <p>*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p>	<p>■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p> <p>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p> <p>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p>

→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해 투자유인을 증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p> <table border="1"> <tr> <td>대기업</td> <td>중견기업</td> <td>중소기업</td> </tr> <tr> <td>1%</td> <td>3%</td> <td>7%</td> </tr> </table>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p>■ 공제율 1~2년간 한시 상향</p> <table border="1"> <tr> <td>기간</td> <td>대</td> <td>중견</td> <td>중소</td> </tr> <tr> <td>① '20년 투자분</td> <td>2%</td> <td>5%</td> <td>10%</td> </tr> <tr> <td>② '21년 투자분</td> <td>1%</td> <td>5%</td> <td>10%</td> </tr> <tr> <td>③ ②이후</td> <td>1%</td> <td>3%</td> <td>7%</td> </tr> </table>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	3%	7%																										
기간	대	중견	중소																									
① '20년 투자분	2%	5%	10%																									
② '21년 투자분	1%	5%	10%																									
③ ②이후	1%	3%	7%																									

→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5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기한) '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6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특례 ○ (상각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다만, '19.7.3.~'19.12.31.에 취득한 경우 75%) - (대기업) 기준내용연수의 50% ○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 시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생산성향상시설('19.7.3.~'19.12.31. 취득분) • 에너지절약시설('19.7.3.~'19.12.31. 취득분) ○ (적용기한) '2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 확대조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75% - (좌 동) ○ 대기업의 대상자산 확대조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생산성향상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 (좌 동)

➔ '20.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7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를 지원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 (이월공제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년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p style="text-align: right;">-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년</p>

➔ '20.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8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대 분야 173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융복합 소재 관련 기술 등 	<p>■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기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제조기술, 고압 컨트롤 밸브 제조기술 등 ② 기존 11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기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 기술, 6G 기술 등

➔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9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 (공제대상)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 *조특령 별표7(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2% + 최대 1% ○ (적용기한) 2020.12.31. 	<p>■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 <p>*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조특령§4③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20.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0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p> <p>*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 ○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적용기한) '21.12.31. 	<p>■ 감면기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 기간은 적용 ○ (좌 동)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 (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 (좌 동) ○ (좌 동)

→ '20.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공동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에 공동 출자시 ○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R&D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투자대상기업은 투자기업이 출자한 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 개발 등에 지출하여야 함(사후관리) -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 (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 (적용기한) '22.12.31.

→ '20.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요 세법 개정내용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13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재무적 투자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 ○ (인수방법) 주식취득 + 자산·사업 양수 ○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내국법인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 ○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총 인수금액, 5천억원] ○ (적용기한) '22.12.31.

→ '20.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4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자진 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 ○ (납부고지 후 :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세액 × 3%) (㉔) + (매 1개월마다 미납세액 × 0.75%) (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연이자 성격(㉓+㉔)은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1일 0.025% ② 체납에 대한 제재(㉕)는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9.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종전 규정 적용



1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기간: 10년 ○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 *상속개시 전 2년간 평균 고용인원 -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 (중견기업은 120%) 이상 ○ 업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자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5년내 10%) 금지 - 예외적 처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대체취득시, 내용연수 도달 자산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단축: 10년 → 7년 ○ 고용유지의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 이상 (중견기업도 동일) - 총급여액 유지 기준 선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자산 처분 허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예외적 처분 허용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및 재취득 필요시 등

➔ 사후관리기간 단축: 법 시행 후 상속분부터 적용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완화: 법 시행 전 공제분도 '20년 이후 적용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16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

■ 해외금융계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감경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폭 확대 : 30~90%	
○ 수정신고		○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경감율(%)	수정신고일	경감율(%)
6개월 이내	70	6개월 이내	90
6개월~1년	50	6개월~1년	70
1년~2년	20	1년~2년	50
2년~4년	10	2년~4년	30
○ 기한후 신고		○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경감율(%)	기한후신고일	경감율(%)
1개월 이내	70	1개월 이내	90
1개월~6개월	50	1개월~6개월	70
6개월~1년	20	6개월~1년	50
1년~2년	10	1년~2년	30

➔ '20.2.11.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모든 세금업무,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최근 국세소식은 매주 「국세청 뉴스레터」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세신고·납부·증명발급은 「홈택스」로
홈택스는 'www.hometax.go.kr'
또는 'www.nts.go.kr'을 통하여 접속

국세관련 문의·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